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. 12. 17 선고 2023가단56059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기술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
담당변호사 도기영, 안형윤

피 고 주식회사 A
변 론 종 결 무변론
판 결 선 고 2024. 12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41,368,465원 및 그 중 133,556,591원1)에 대하여 2023. 7. 29.부터, 204,052,019원에 대하여 2024. 8. 2.부터 각 2024. 10. 7.까지 연 8%의, 2024. 10. 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

판사 신교식

별지

1) 2024. 9. 5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는 133,556,791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뒤 변경된청구원인과 관련된 서증 갑12호증의2에는 133,556,591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청구취지는 명백한 오기로 보여 직권 수정하여 인정함